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2022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맞이한 파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령 2022년 당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노동자들이,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원사업주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 5인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역시 2022년 하이트진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사업주인 하이트진로에게 운송료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참여한 주요 조합원들에게 2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제2조가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원사업주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사업주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 권리분쟁 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3조의 개정 역시 필수적입니다. 설령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단체행동권의 실효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이외에 개인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부진정연대 책임의 원칙 역시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영업손실, 고정비용 등의 가정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감면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재정상태,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작금의 현실과 같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수의 노동조합법 제2조 또는 제3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조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준국인 만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동3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외침, 절박한 파업에 대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국제규범의 위반을 논하기 앞서 비인간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용우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변호사 히라카타 가오루